


제2015 - 5차 신용정보협의회 의사록

- 일 시 : 2015. 9. 24.
- 장 소 : 서면 의결

의 결 사 항

【제의안건】

1. “ 「신용정보관리규약」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원안(기 배부)대로 의결하다.
2. “ 「신용정보제재금 부과기준」 제정(안)”을 심의한 결과, 원안(기 배부)대로 의결하다.
3.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통합사무국 2015년 별도적립금 추가 사용(안)”을 심의한 결과, 원안(기 배부)대로 의결하다.

작성자 :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부 

제2015-5차 신용정보협의회 안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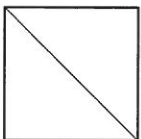
제2015-5차 신용정보협의회 안건

2015. 9. 24.

2015. 9. 24.

구분	의안제목	비고
의결안건	1. 「신용정보관리규약」 개정(안) 2. 「신용정보제재금 부과기준」 제정(안) 3.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통합사무국 2015년 별도적립금 추가 사용(안)	

신용정보협의회



번호	회의차수	일자
제 1 호	제2015 - 5차	2015. 9. 24.

의안번호	제 1 호	의결사항
의결일	2015. 9. 24. (제2015 - 5차)	

「신용정보관리규약」 개정(안)

신용정보협의회 의결안건

제출자	신용정보협의회 의장 유운상
제출년월일	2015. 9. 24.

의제 : 「신용정보관리규약」 개정(안)

요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신용정보관리규약」을 불입과 같이 개정*하고자 함.

- * ①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신용정보를 집중
- ② 자산유동화에 따라 채권자가 변동된 경우 채권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이 신용정보를 집중 업무 수행
- ③ 신용거래정보 집중시기를 10일에서 7영업일로 변경
- ④ 표준 동의서 폐지

붙임 : 1. 「신용정보관리규약」 개정(안) 1부.

2. 「신용정보관리규약」 개정 대비표 1부. 끝.

(붙임1)

「신용정보관리규약」 개정(안)

1.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신용정보 집중

가. 개정취지

- 「국민행복기금이 협약금융기관등으로부터 채권을 매입한 정보 및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하도록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국민행복기금이 보유 하고 있는 신용정보를 집중

*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26조의4(신용정보집중기관의 허가 세부요건) ③ 영 제21조제9항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해 집중관리·활용되는 신용정보의 구체적인 등록 및 이용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별표6] (전문 불임2참고)

6. 공공정보

등록정보	등록기관	등록기준		이용기관
		대상주체	등록시기	
국민행복기금이 협약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채권을 매입한 정보 및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정보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영 제21조제2항의 기관 중 해 당 등록정보 보유 기관	해당 주체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 관 보유정보 등록시기는 신용정보집중 관리위원회가 정함	○ 영 제21조제2항 의 기관 ○ 법 제4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 구체적인 등록 및 해제 기준에 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국민 행복기금)로부터 첨부3과 같은 요청이 있어 동 내용을 반영하여 규약을 개정하고자 함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신용정보 집중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25조의2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한 중요 사안에 대한 심의
2. 신용정보의 집중관리·활용에 드는 경상경비, 신규사업의 투자비 등의 분담에 관한 사항
3.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의 신용정보제공의무 이행 실태에 관한 조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제재를 부과하는 사항
4. 신용정보의 업무목적 외 누설 또는 이용의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신용정보의 집중관리·활용에 필요한 사항

동법 부칙 제1조(신용정보집중기관의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둔 신용정보협의회는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로 본다. 다만, 해당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허가를 신청하기 전까지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신용정보협의회 규약 제4조(협의사항)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 결정한다.

1.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별표 6> 및 동 규정 제19조제1항의 범위내에 서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하는 신용정보의 구체적인 종류와 관리기간 등에 관한 사항
2. ~ 4. (생략)
5. 기타 신용정보의 집중관리·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015-4차 신용정보실무협의회 협의(15. 9. 17)]

나. 개정요지

○ 공공정보 신설

- 규약 본문 제11조 【공공정보】 ①에 아래와 같이 신설

17. 국민행복기금이 협약금융기관등으로부터 채권을 매입한 거래처 및 채무 조정 약정을 체결한 거래처

○ 관리기준 세부사항

- 「관리기준」 5. 공공정보에 아래와 같은 세부사항 신설

코드	등록사유	해제사유	기록 보존 기간
1701	국민행복기금이 협약금융기관등으로부터 채권을 매입한 거래처 - 채무조정 약정 취소(실호)시 채등록(등록사유발생일은 당초사유발생일로 한다)	- 채무 변제 완료 - 채무 조정 약정 체결 -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5년경과 - 등록코드 1101, 1201, 1301의 등록사유 발생시	해제와 동시에 삭제
1702	국민행복기금과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거래처	- 채무조정 약정 취소(실호) - 채무조정 약정에 따른 변제 완료 - 채무조정 약정에 따라 2년간 변제 - 등록사유발생일로부터 5년경과시 - 등록코드 1101, 1201, 1301의 등록사유 발생시	해제와 동시에 삭제

다. 시행일 : 2015. 12. 1.

2. 자산유동화에 따라 채권자 변경시 신용정보 집중

가. 개정취지

- (감사원 지적) 금융감독원감사원 은행연합회 공동감사(15.4.1.~28.) 결과, 감사원에서 자산유동화 대상 회사채 연체정보 집중과 관련하여 신용정보관리규약 제18조를 「자산유동화 등에 의해 채권자가 SPC로 변경된 경우에는 채권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이 연체정보 등 신용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별표6]에 감사원 지적 사항 관련 규정* 신설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6조의4(신용정보집중기관의 허가 세부요건) ③ 영 제21조제9항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해 집중관리·활용되는 신용정보의 구체적인 등록 및 이용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별표6] (전문 불임2참고)

1. 식별정보(생략)

- 1) 영 제21조제2항의 기관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라 유동화자산의 관리를 위탁받은 경우 해당 유동화자산**의 등록 정보 보유기관으로 본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자산관리의 위탁) ① 유동화전문회사 등(신탁업자를 제외한다)은 자산관리위탁계약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자산관리자"라 한다)에게 유동화자산의 관리를 위탁하여야 한다.

1. 자산보유자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
3. 기타 자산관리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자산보유자"라 함은 유동화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 나.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 라.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동법 제5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 마. 삭제 <2011.5.19.>
-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 투자중개업자·진행투자업자 또는 종합금융회사
- 사.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 아. 삭제 <2007.8.3.>
- 자. 삭제 <2007.8.3.>
- 차.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 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 타.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
- 파.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 하. 삭제 <2012.12.18.>
- 거.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자
- 너. 신용도가 우월한 법인(외국법인과 당해 외국법인이 설립하는 국내법인을 포함한다)으로서 금융위원회가 미리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에 대하여 자산유동화의 필요성이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법인
- 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 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 마. 가목부터 러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자산보유자)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러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3.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5.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6.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7. 「주택도시보증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8.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주택사업 또는 토지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지방공기업
 9. 농업협동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협동조합(여신규모 1천억원 이상인 조합에 한한다)
 10.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11.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
 12. 삭제 <2014.12.30.>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3. "유동화자산"이라 함은 자산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채권·부동산 기타의 재산권을 말한다.

나. 개정요지

-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등에 의해 채권자가 변경된 경우 채권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이 해당 신용정보의 집중업무 수행

개 정 전	개 정 후
제18조 【자산유동화에 따른 신용정보 집중 방식 변동】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등에 의해 채권자가 변경된 경우 채권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이 해당 신용정보의 집중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8조 【자산유동화에 따른 신용정보 집중 방식 변동】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등에 의해 채권자가 변경된 경우 채권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이 해당 신용정보의 집중업무를 수행한다.

다. 시행일 : 2015. 12. 1.

3. 신용거래정보 집중시기 변경 (10일 → 7영업일)

가. 개정취지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신용거래정보의 등록시기가 10일에서 7영업일로 개정(전문 불입1참고)되어 동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26조의4(신용정보집중기관의 허가 세부요건) ③ 영 제21조제9항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해 집중관리·활동 되는 신용정보의 구체적인 등록 및 이용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별표6]

2. 거래정보

등록정보	등록기관 가. 대출, 담좌거래 등 관련 거래 정보	등록기준		이용기관
		대당주체	등록시기	
대출원황 (생략)	영 제21조제2항의 기반 중 해당 등록정보 보유기관	해당개인 (생략)	등록시용발생 일로부터 7영업일이내	생략

나. 개정요지

- 「신용거래정보」 중 「개설·발급정보」, 「개인채무보증정보」의 등록시기 변경
- 10일 → 7영업일

다. 시행일 : 2015. 10. 1.

4. 표준동의서 제도 폐지에 따라 신용정보관리규약 표준동의서 폐지

가. 개정취지

-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이 개정되어 금융감독원장이 제정하는 “표준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서”, “표준 개인신용정보 이용 동의서” 및 “표준 개인신용정보 조회동의서” 제도가 폐지* 됨에 따라 신용정보관리규약의 표준 동의서 폐지 필요

* 관련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신규조문 대비표

개정 전	개정 후
<p>제34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② 영 제28조제2항의 각 호의 내용이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등을 통해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p> <p>③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32조제1항 및 법 제33조제1호에 따라 해당 개인으로부터 동의를 받고자 하는 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표준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서” 및 “표준 개인신용정보 이용 동의서”를 정할 수 있다.</p> <p>④ 영 제28조제3항제3호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개인 비밀번호”란 다음 각 호의 비밀번호를 말한다.</p> <p>1. 일회용비밀번호(OTP)</p> <p>2. 금융회사에게 등록된 비밀번호와 금융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안카드의 특정번호</p> <p>제36조(표준 조회동의서의 작성) 각</p>	<p>제34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영 제28조제2항 각 호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p>

<각 제>

<p>표준등외사 폐지</p> <p>국민행복기금 관련 국민행복기금 국립중앙도서관</p> <p>표준등외사 폐지</p>	<p><사 제></p> <p>제12조 (원행과 관음) ① ~ ⑦ (원행과 관음) 및 제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거래처</p> <p>17. 국민행복기금이 협약금융기관등으로부터 채권을 매입한 거래처</p> <p>1. ~ 16. (원행과 관음) 제11조 (공공정보) ① (원행과 관음) 제6조 ~ 제10조 (원행과 관음) ③ ~ ⑥ (원행과 관음)</p> <p><사 제></p> <p>제5조 (신용거래정보) ① (원행과 관음) 제1조 ~ 제4조 (원행과 관음)</p>	<p>제13조 (개인신용정보 조회에 대한 동의) 금융기관은 종합신용정보청구권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 받는 경우 「표준 개인(신용)정보 제공동의서」 <별지 제4호 서식>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신용도판단 정보 제공동의서, <별지 제4호 서식>를 받아야 한다.</p> <p>제12조 (생략) ① ~ ⑦ (생략)</p> <p><신 선></p> <p>1. ~ 16. (생략) 제11조 (공공정보) ① (생략) 제6조 ~ 제10조 (생략) ③ ~ ⑥ (생략)</p> <p>4. 제무조정(약정시 1회 청구)</p> <p>3. 대출거래(약정시 1회 청구)</p> <p>2. 신용카드(신용체크카드) 발급(자동갱신 발급 제외) 및 해지거래</p> <p>1. 가계당려액금 개설 및 해지 거래</p> <p>표준등외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p> <p>신용정보청구권 등에 관계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표준 개인(신용)정보 제공동의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의 신용거래정보를 종합 제5조 (신용거래정보) ① (생략)</p> <p>제1조 ~ 제4조 (생략)</p>
<p>고</p>	<p>개</p> <p>정(안)</p>	<p>행</p> <p>연</p>

신용정보관리규약 개정 대비표

(붙임2)

- 첨 부 : 1. 감사원 통보 문서 1부.
- 2.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별표6] 1부.
- 3. 신용정보 등록관련 관리규약 변경 요청 요건(국민행복기금) 공문 1부. 문

다. 시행일 : 2016. 3. 12.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해당규정이 2016. 3. 12부터 시행'되므로 동 규약의 개정규정도 동일하게 시행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부칙 제13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3, 제34조, 제36조,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8조의4, 제39조의2, 제40조, 제43조의2 및 제43조의3의 개정 규정은 2016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신용정보관리규약 제5제2항 및 제13조, <별지 제2호 서식> 표준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서, <별지 제4호 서식> 표준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삭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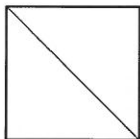
- 표준등외사 관련 조문 및 양식 삭제

나. 개정요지

<p>국민행복기금 제22조제2항에 따른 해당 개인으로부터 동의를 받고자 하는 자가 광고할 수 있도록 "표준 개인신용정보 조회동의서"를 결합 수 있다.</p>	<p>수 있다.</p>
---	--------------

<p>계1조 「시행령」이 규약은 2015. 10. 1.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15. 12. 1.부터, 제5조,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16. 3. 12.부터 시행한다.</p>	<p>부 칙</p> <p><별지 제5호 서식> ~ <별지 제7호 서식> (현행과 간음)</p> <p><별지 제5호 서식> (생략)</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조회자(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신용)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예) 정보할 제공받는 날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보유·이용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p> <p>※ 이의 대항 효력이 없을 경우 거래관계의 설정 또는 유지가 불가능할 수 있음은 알려드립니다.</p> <p>※ 신용정보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이 신용조회사를 통하여 귀하의 신용정보를 조회한 기록에 의해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음은 알려드립니다.</p> <p>년 월 일 성명 : 인</p> </div>
<p>계</p>	<p>행</p>

<p><별지 제3호 서식> (현행)</p> <p><별지 제4호 서식></p> <p><별지 제3호 서식> (현행과 간음)</p> <p><상 제></p>	<p>표준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p> <p>기관 귀하</p> <p>「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 따라 귀사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정보제공기관으로부터 본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 조회할 신용정보 : (예) 개인신용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등급 및 평점정보 등</p> <p>□ 조회 목적 : (예) 거래관계의 설정 또는 유지 등</p> <p>□ 조회동의 효력 기간 : (예) 귀사가 상기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당해 거래의 효력이 종료(예: 기간만기, 계약해지 등)하는 시점까지 상기 동의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다만, 귀사가 신청한 거래가 본 _____에 의해 거래권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합니다.</p>
<p>계</p>	<p>행</p>



번 호	회 의 차 수	일 자
제 2 호	제2015 - 5차	2015. 9. 24.

의안번호	제 2 호	의 결 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5. 9. 24. (제2015 - 5차)	

「신용정보제금 부과기준」 제정(안)

신용정보협의회 의결안건

제 출 자	신용정보협의회 의장 유운상
제출년월일	2015. 9. 24.

의 제 : 「신용정보 제제금 부과기준」 제정(안)

요 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시행¹됨에 따라 불입과 같이 「신용정보 제제금 부과기준」을 제정하고자 함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신용정보집중 관리위원회의 업무 등) ② 제1항에 따른 제제금의 부과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이하 "신용 정보집중관리위원회"라 한다)가 정한다.

- 붙 임 : 1. 「신용정보 제제금 부과기준」 제정(안) 1부.
2. 「신용정보 제제금 부과기준」 전문 1부. 끝.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신용정보 집중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25조의2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한 중요 사안에 대한 심의
2. 신용정보의 집중관리·활용에 드는 경상경비, 신규사업의 투자비 등의 분담에 관한 사항
3.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의 신용정보제공의무 이행 실태에 관한 조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제재를 부과하는 사항
4. 신용정보의 업무목적 외 누설 또는 이용의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신용정보의 집중관리·활용에 필요한 사항

동법 부칙 제11조(신용정보집중기관의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둔 신용정보협의회는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로 본다. 다만, 해당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허가를 신청하기 전까지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신용정보협의회 규약 제4조(협의사항)**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 결정한다.

1. ~ 2. (생략)
3. 금융기관의 신용정보제공의무의 이행실태에 관한 조사 및 제재금의 부과·사용에 관한 사항
5. (생략)

[제2015-4차 신용정보실무협의회 협의('15. 9. 17)]

(붙임)

「신용정보 제재금 부과기준」 제정(안)

1. 제정 취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제재금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주체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에서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로 변경^{*}된 바, 현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이 제·개정한 「신용정보 제재금 부과기준」을 신용정보협의회 의결을 통해 제정하고자 함

^{*} 개정법 부칙 제11조에 따라 개정법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허가신청 전까지 신용정보협의회에서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의 업무 담당 (근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11조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둔 신용정보협의회는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로 본다. 다만, 해당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허가를 신청하기 전까지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제정 내용

○ 신용정보법 개정 사항을 세부적으로 반영^{*} 하고, 주요 사항은 현행 「신용정보 제재금 부과기준」 체계 유지

^{*} 「신용정보 제재금 부과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하 생략) 등

3. 시행일 : 신용정보협의회 의결일로 함

신용정보 제재금 부과기준

제정 2015.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신용정보의 정확성·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제공기관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종합집중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신용정보 제공 누락·지연, 거짓 등록에 대한 제재금을 부과하는데 따른 세부 기준 및 절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기준은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서 정하는 금융기관 및 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 【부과기준】 ① 종합집중기관의 장은 금융기관의 신용정보 등록에 대한 신용정보의 정확성·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용정보 관련 법령, 신용정보협회의 및 관련 규약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종합집중기관에 등록하여야 할 신용정보의 누락·지연, 거짓 등록 등에 대하여 “(별표 1) 제재금 부과 세부기준”에 따라 제재금을 부과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되는 제재금 중 가장 큰 금액의 제재금을 부과한다.
1. '지연, 누락 및 고의·부적절'에 대한 제재금과 '연체등록, 개인대출정보, 채무보증 정보 등록금액의 부정확'에 대한 제재금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2. 등록대상이 아닌 신용정보를 등록하거나 등록대상인 신용정보를 해지·해제로 처리하는 등 신용정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후 정확하게 바로잡는 과정에서 복수의 제재금이 적용되는 경우

제4조 【제재금 용도】 제3조에 의거 징수한 제재금은 별도로 회계처리하며, 용도는 신용정보협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특별경비로 사용한다.

- 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조사·연구
- ② 신용질서 확립을 위한 세미나·행사 개최
- ③ 신용정보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

- ④ 신용정보 교육, 교재발간 및 포상
- ⑤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확충
- ⑥ 신용정보의 제공·이용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개발·구입 및 특별용역비
- ⑦ 기타 신용정보협회의가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이의신청】 ① 종합집중기관의 장은 매월단위로 신용정보의 누락·지연·거짓 등록 금융기관에 대하여 제재금 부과예정 통보를 하며, 해당 금융기관은 제재금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증빙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종합집중기관의 장은 전항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 후 제재금 부과확정 통보를 하며, 제재금 부과확정 통보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면 모든 이의신청 절차가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제6조 【사무처리】 종합집중기관의 장은 제5조의 이의신청 등 제재금 부과 관련 사무 처리를 각 협회 또는 중앙회를 통하여 업권별로 일괄처리 할 수 있다.

제7조 【부과배제】 ① 종합집중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2) 제재금 부과 배제기준”에 따라 제재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1. 신규 가입, 파업, 파산·청산 등이 발생한 경우
2. 전산시스템 구축 변경 (프로그램 개발·변경 포함) 또는 통신장애가 발생한 경우
3. 오류 통보(기한내에 전송)된 건을 재집중한 경우
4. 신용정보의 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같은법 시행령·시행규칙, 신용정보입감등록규정 및 신용정보관리규약의 개정으로 정보등록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5. 식별정보 변경 및 등록의 경우
6. 회생·파산 등과 관련된 경우
7. 채권의 양수도와 관련된 경우
8. 기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등록, 해지·해제 및 등록취소 오류와 관련된 경우
나. 등록금액 또는 사유발생일 오류와 관련된 경우
다. 특수채권 편입과 관련된 경우
라.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가 제기된 경우
마. 거대 취소가 발생한 경우

(별표 1)

계 계 금 부 과 세 부 기 준

1. 신용정보별 집중기준

구	분	집 중 기 한
- 연체등 정보 및 금융질서문란정보 등록·해제		○ 사유발생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집중
- 개인대출정보 등록·해지		○ 사유발생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집중. 다만, 계계금은 사유발생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집중하지 않는 경우 부과
- 채무보증정보 등록·해지		○ 사유발생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집중
- 가계당좌 및 당좌예금 개설·해지		○ 사유발생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집중
- 신용카드(신용체크카드) 발급 및 해지		○ 사유발생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집중
-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정보 등록·해지		○ 사유발생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집중
- 대장기업체정보 등록		○ 사유발생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 집중
- 개인기업 및 법인에 관한 대출(연체포함), 지급보증, 유가증권, 담보, 한도, 법인채무보증 및 채무 인수야청 등의 신용공여(신용공여기간 포함)정보 등록		○ 평일보 : 사유발생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 집중 ○ 말일보 : 사유발생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집중 ○ 월보 : 사유발생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집중
- 기업어음거래정보 등록		○ 사유발생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 집중
- 신용능력정보 등록		○ 사유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 집중

바. 경미한 사항
사. 기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종합집중기준의 장은 신용정보의 정확도 제고 등을 위하여 신용정보의 일괄정비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협의회와의 의결을 거쳐 일정기간동안 계계금 부과를 배제할 수 있다.

제8조 【부과제외】 신용정보 등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등록 여부에 따른 판단에 시일이 소요되거나 관계기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은 계계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중 금융질서 문란정보

2.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기목부터 라목 및 4호 나목의 정보

제9조 【계계금 부과 최고금액의 설정】 ① 종합집중기준의 장은 해당 금융기관의 고의·중과실이 없고, 다른 금융기관 및 신용조회회사의 신용도 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 동일한 원인행위 별로 최고금액을 설정하여 계계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최고금액은 3천만원으로 한다.

② 종합집중기준의 장은 전항의 결정에 참고하기 위하여 유권기관의 신용정보 전문가로 구성된 「신용정보 계계금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기준은 2015. . . 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종합집중기준에 집중한 신용정보의 누락·지연, 거짓 등록 등에 대해서는 종전 신용정보 계계금 부과기준을 따른다.

2. 지연 및 누락 기간별 부과기준

(1) 지연^{제1)} 기간별 부과기준

구분	대상	지연일수	계 계 금	사유코드	비 고	
동록· 해제(지) 등의 지연	- 개인대출정보 등록·해제 - 채무보증정보 등록·해제 - 당좌(가계당좌)예금 개설·해제 - 신용카드(신용체크카드) 발급·해제 - 신용카드 원금서비스정보 등록·해제	30일 이내	2만원	111	정보건별 부 과	
		30일 이내	2만원	111		
		90일 이내	4만원	112		
		180일 이내	6만원	113		
		180일 초과	8만원	114		
		30일 이내	2만원	121		
		90일 이내	4만원	122		
		180일 이내	6만원	123		
		180일 초과	8만원	124		
		1영업일 이내	2만원	131		기준일자별 부 과
		3영업일 이내	4만원	132		
		6영업일 이내	8만원	133		
		6영업일 초과	10만원	134		

※ 주1) 지연 [집중 대상 및 내용이 정확히 처리+집중기한 경과]

- 신용정보의 집중 대상 및 내용은 정확하나 집중기한이 경과하여 처리한 경우
- 처리대상이 아닌 신용정보를 등록, 해제, 등록취소, 정정 등(등록금액·사유발생일을 잘못 등록·정정하는 경우 '해제와 동시에 삭제되는 경우만을 포함) 처리 후 금융기관이 스스로 오류를 바로잡은 경우
- 사유발생일의 부정확(사유발생일을 잘못 등록·정정하여 '해제와 동시에 삭제되는 경우는 제외)을 금융기관이 스스로 바로잡은 경우

(2) 누락^{제2)} 기간별 부과기준

구분	대상	누락일수/금액	계 계 금	사유코드	비 고	
동록· 해제(지) 등의 누락	- 개인대출정보 등록·해제 - 채무보증정보 등록·해제 - 당좌(가계당좌)예금 개설·해제 - 신용카드(신용체크카드) 발급·해제 - 신용카드 원금서비스정보 등록·해제 - 개인기업 및 법인에 관한 대출 (연체포함) 지급보증 유가증권 담보, 한도, 법인채무보증 및 채무인수약정 등의 신용공여 (신용공여기간 포함)정보 등록	30일 이내	4만원	211	발생내역별 부 과	
		90일 이내	6만원	212		
		180일 이내	8만원	213		
		180일 초과	10만원	214		
		30일 이내	4만원	221		
		90일 이내	6만원	222		
		180일 이내	8만원	223		
		180일 초과	10만원	224		
		1억원 이하	2만원	231		등록대상 (개인기업 및 법인)별 부과
		10억원 이하	5만원	232		
		100억원 이하	10만원	233		
				100억원 초과		20만원
10억원 이하	2만원	241				
50억원 이하	5만원	242				
100억원 이하	10만원	243				
		100억원 초과	20만원	244	등록대상(개인기업 및 법인)별 부과 - 월말여신 제외	
4주 연속	2만원	251				
8주 연속	5만원	252				
		12주 연속	20만원	253	구간별 기간당해서 해당 계계금을 각각 부과함	
		12주 초과 연속	고의·부적절			

※ 주2) 누락[집중 대상 및 내용이 정확히 처리 + 집중기한 경과 + 비자발적 처리]

- 신용정보의 집중 대상 및 내용은 정확하나 집중기한 내에 처리하지 못하고 종합집중기관이나 감독당국 등의 확인(계재대상 불보, 이행실태 조사실시 등. 이하 동일) 및 인내에 따라 오류를 바로잡은 경우
- 처리대상이 아닌 신용정보를 등록, 해제, 등록취소, 정정 등(등록금액·사유발생일을 잘못 등록·정정하는 경우 '해제와 동시에 삭제되는 경우만을 포함) 처리 후 종합집중기관이나 감독당국 등의 확인 및 인내에 따라 오류를 바로잡은 경우
- 사유발생일의 부정확(사유발생일을 잘못 등록·정정하여 '해제와 동시에 삭제되는 경우는 제외)을 종합집중기관이나 감독당국 등의 확인 및 인내에 따라 오류를 바로잡은 경우
- "처리대상이 아닌 신용정보를 등록, 해제, 등록취소, 정정 등(등록금액·사유발생일을 잘못 등록·정정하는 경우 '해제와 동시에 삭제되는 경우만을 포함) 처리 후" 및 "사유발생일을 부정확(사유발생일을 잘못 등록·정정하여 '해제와 동시에 삭제되는 경우는 제외)하게 처리 후" 기록보존기간 만료로 오류를 바로잡을 수 없는 경우

3. 부정확에 따른 부과기준

(1) 등록 내용의 부정확^{가)}

구분	대상	건수	계재금	사유코드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체등정보, 개인대출정보, 채무보증 채무보증정보 등록금액의 부정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체등정보, 개인대출정보, 채무보증 정보의 등록금액을 오등록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2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4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전별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체등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개인대출정보, 채무보증정보, 신용카드 발급정보, 당좌(가계) 계좌) 예금 개설정보 사유발생 일의 부정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신용정보의 제재금 대상 기간을 산정 하여 「지연, 누락 및 고의·부적절」에 따른 부과기준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전별 부과 	

※ 주3) 등록 내용의 부정확 (등록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신용도판단정보, 개인대출정보, 채무보증정보의 등록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단, 연체등 정보중 등록금액의 부정확이 '해제'와 동시에 삭제되는 결과될 초래하는 경우는 제외
- 기업신용공여정보 및 기업어음거래정보를 제외한 신용거래정보, 신용도판단정보의 사유발생일이 사실과 다른 경우, 단, 연체등 정보중 사유발생일의 부정확이 '해제'와 동시에 삭제되는 결과될 초래하는 경우는 제외
- 기업신용공여정보, 기업어음거래정보의 식별번호, 계정과목코드, 등록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기업신용공여정보, 기업어음거래정보 별로 각각 건수를 산정하여 적용)

(2) 고의·부적절^{가)}

구분	대상	계재금	사유코드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체등정보, 금융질서 문란정보, 개인대출정보, 등록주소, 경정 등(등록금액·사유발생일을 오프 채무보증정보, 신용카드 발급정보, 당좌(가계당좌) 예금 개설정보 등록, 해지·해제 등의 고의·부적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5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생내역 별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기업체정보, 기업 신용공여정보, 기업어음 거래정보 등록의 고의·부적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의로 신용정보를 지연·누락 처리한 경우 대상기업체정보를 12주를 초과하여 연속 등록 누락 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5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등록대상 (개인기업 및 법인) 별 부과

※ 주4) 고의·부적절 [고의로 신용정보를 부적절하게 처리]

- 고의로 신용정보를 지연·누락으로 처리한 경우
- 고의로 등록대상이 아닌 신용정보를 등록하거나 등록이 유지되어야 하는 신용정보를 해지·해제, 등록주소, 경정 등(등록금액·사유발생일을 잘못 등록·정정하는 경우 '해제'와 동시에 삭제되는 경우만을 포함) 처리한 경우
- 신용정보의 등록, 해지·해제, 등록주소, 경정 등을 누락하였으나 종합집중기관 또는 감독기관 등의 확인(제재대상 등록, 이행실태 조사실시 등, 이하 동일) 및 안내(비정규과일 송신방법으로 처리)에도 불구하고 해당 금융기관이 미조치(비정규과일 수신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한 경우, 다만, 종합 집중기관 또는 감독기관 등의 확인 및 안내에도 불구하고 대상기업체정보 등록을 12주를 초과하여 연속 누락하는 경우
- 처리대상이 아닌 신용정보를 등록, 해지·해제, 등록주소, 경정 등(등록금액·사유발생일을 잘못 등록·정정하는 경우 '해제'와 동시에 삭제되는 경우만을 포함)으로 처리하였으나 종합집중기관 또는 감독기관 등의 확인 및 안내(비정규과일 송신방법으로 처리)에도 불구하고 해당 금융기관이 미조치(비정규과일 수신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한 경우, 다만, 종합집중기관 또는 감독기관 등의 확인 및 안내에도 불구하고 "대상기업체정보"가 누락된 기업신용공여정보를 사실과 달리 최근 1년 내에 3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해지한 경우

제제금 부과 배제기준

1. 신규 기업, 파업, 파산·청산 등이 발생한 경우

배제 사유	배제 내용	배제 요건	사유코드
신규 기업	중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신규로 가입한 기관인 경우(영업정지 후 재 개시하는 기관 포함)	- 신규기업 서류 등 증빙자료 확인 후 배제 - 신규기업일로부터 3월 이내 조치 - 영업 재개일로부터 3월 이내 조치	111
파업 등	직원의 파업 및 태업으로 인한 경우	- 경의신고사실 확인서류 등 증빙자료 확인 후 배제 - 경의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 조치	112
인·허가 취소, 영업정지, 파산, 해산, 청산	해당 금융기관이 인·허가취소, 영업정지, 파산, 해산, 청산 등에 해당되는 경우	- 증명자료 확인 후 배제	113

2. 전산시스템 구축 변경 (프로그램 개발·변경 포함) 또는 통신장치가 발생한 경우

배제 사유	배제 내용	배제 요건	사유코드
전산시스템 구축, 변경, 통신장에 등	신규 시스템 구축, 하드웨어 증설 등 시스템 재구축(프로그램 개발·변경 포함)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금융기관의 합병 등으로 인한 전산통합 포함)	- 시스템 재구축 등 관련 증빙자료 확인 후 배제 - 변경사항 적용일 또는 장애 발생일 등(이하 "적용일 등"이라 함)으로 부터 3월 이내 조치	211
	온라인 전송 시 통신장애로 인하여 정보가 일부만 전송되거나 불완전하게 전송된 경우	- 해당일자에 중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발송한 전산파일 등 증빙자료 확인 후 배제 - 적용일 등으로부터 3월 이내 조치	212

* 등록정보에 오류가 있음을 알게 된 날이 적용일 등으로부터 2개월 이상 경과한 때에는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단, 적용일 등으로부터 최장 1년 이내로 제한) 조치. 단, 기업신용공여 정보(기업어음거래정보 포함)의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함.

3. 오류 통보의 경우

배제 사유	배제 내용	배제 요건	사유코드
오류 통보	신용정보 등록(기안내 집중)시 중합 집중기관으로부터 오류 통보된 것을 재등록한 경우	- 오류통보 내역 확인 후 배제 - 오류통보일로부터 3월 이내 조치 - 대상기업체정보의 경우, 각각의 제제금 부과대상기간(4주, 8주, 12주)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조치	311

4. 신용정보의 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같은법 시행령·시행규칙,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및 신용정보관리규약의 개정으로 정보등록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배제 사유	배제 내용	배제 요건	사유코드
정보등록 기준 변경	관계법령의 정보등록기준 변경과 관련된 신용정보의 처리가 지연되거나 오류가 발생한 경우	- 해당 정보등록기준 변경사항 확인 후 배제 - 등록기준 변경사항 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 조치	411

5. 식별정보 변경 및 등록 등

배제 사유	배제 내용	배제 요건	사유코드
식별정보 변경 및 등록	주민등록번호 변경으로 기 등록정보를 변경된 주민등록번호로 재등록한 경우	-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자료 확인 후 배제	511
식별번호 누락	기업에 대한 정보등록시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법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법인 등록번호로 일괄 등록 하여야 하나 두 번호 중 하나의 번호로만 등록된 후 미등록번호를 추가 등록하거나 해지 또는 해제시 어느 하나를 누락한 경우	- 원장 등 증빙자료 확인 후 배제 - 기업신용공여정보(기업어음거래정보 포함)는 제외	512
대상기업체 정보 누락 등	임의단체 및 조직변경 법인의 식별정보 오류, 해외현지법인정보 확인 지연, 장업, 상속·중여, 증명서 분실, 채무승계 등에 따른 사업자 등록 및 변경지연이나 제출 지연의 경우	- 원장 및 사업자등록증 등 증빙자료로 확인 후 배제 - 제제대상기간으로부터 2주 이내 조치	513

6. 회생·파산 등

가. 파산면책

배제 사유	배제 내용	배제 요건	사유코드
파산면책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산면책결정일 이후 연체등정보, 대출정보, 채무보증정보 등을 취소 등록(최초 등록) 후 동 사실을 인정한 시점에 등록 취소(777) 처리하는 경우 - 파산면책결정에 따라 기 해제된 대출정보, 채무보증정보를 취소 등록 후 동 사실을 인정한 시점에 등록취소<777> 처리하는 경우 	- 파산면책결정 서류 등 증빙자료 확인 후 배제	6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산면책결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로 등록된 연체등정보는 해제하였으나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된 연체등정보는 해제하지 않아 동 사실을 인정한 시점에 면책결정일자로 소급 해제한 경우 	- 파산면책결정 서류 등 증빙자료 확인 후 배제	6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산면책 취소에 따라 연체등정보, 대출정보, 채무보증정보 등을 당초 등록사유 발생일로 소급 재등록한 경우 	- 파산면책취소 서류 등 증빙자료 확인 후 배제	613
	기타 파산면책과 관련하여 불기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관련 서류 등 증빙자료 확인 후 배제	614

나. 회생인가

배제 사유	배제 내용	배제 요건	사유코드
회생계획 인 가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일괄 해제된 연체등정보중 회생채권에 포함되지 않은 연체등정보를 당초 등록사유 발생일자로 소급 재등록한 경우 	- 회생계획 인가 서류 등 증빙자료 확인 후 배제	6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생계획 인가결정 이후 연체등정보를 취소 등록(최초등록) 후 동 사실을 인정한 시점에 등록취소(777) 처리하는 경우 -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기 해제되어 기록보존기간이 만료하거나 기록보존중인 연체등정보(회생채권에 포함)가 취소 등록에 의해 별개의 연체등정보로 등록된 후 동 사실을 인정한 시점에 등록취소<777> 처리하는 경우(단, 기 해제되어 기록보존중인 연체등정보가 취소등록에 의해 등록상태로 전환된 경우에는 변경계획인가일을 해제사유발생일로 하여 해제 처리해야 함) 	- 회생계획 인가 서류 등 증빙자료 확인 후 배제	6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른 이행 완료로 면책되어 대출정보와 채무보증정보 등을 면책일로 소급 해제한 경우 	- 회생계획 면책 서류 등 증빙자료 확인 후 배제	6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생계획 인가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로 등록된 연체등정보는 해제하였으나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된 연체등정보는 해제하지 않아 미해제사실을 인정한 시점에 인가일자로 소급 해제한 경우 	- 회생계획 인가 서류 등 증빙자료 확인 후 배제	624
	회생계획 인가 폐지로 연체등정보를 당초 등록사유발생일로 소급 재등록한 경우	- 회생계획 폐지 서류 등 증빙자료 확인 후 배제	625
	기타 개인회생절차와 관련하여 불기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관련 서류 등 증빙자료 확인 후 배제	626

다. 신용회복지원

배제 사유	배제 내용	배제 요건	사유코드
	신용회복지원원회의 신용회복지원확정에 따라 인필해제된 연체등정보중 신용회복지원 협약 가입기관이 아니거나 신용회복지원 대상 채권에 포함되지 않아 연체등정보를 당초 등록사유 발생일자로 소급 재등록한 경우	- 신용회복 결정 서류 등 증명자료 확인 후 배제	631
	- 신용회복지원확정 이후 연체등정보를 취소 등록(최초등록) 후 동 사실을 인정한 시점에 등록취소(77) 처리하는 경우 - 신용회복지원확정에 따라 기해제되어 인 연체등정보(지원대상채권에 포함)가 취소 등록에 의해 별개의 연체등정보로 등록된 후 동 사실을 인정한 시점에 등록취소(77) 처리하는 경우(단, 기 해제되어 기록보존중인 연체등정보기 취소등록에 의해 등록상대로 전환된 경우에는 신용회복지원확정일을 해제사유발생일로 하여 해제 처리해야 함)	- 신용회복 결정 서류 등 증명자료 확인 후 배제	632
신용회복 지원 관련	신용회복지원확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로 등록된 연체등정보는 해제하였으나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된 연체등정보는 해제하지 않아 미해제사실을 인정한 시점에 신용회복 지원확정일자로 소급 해제한 경우	- 신용회복 결정 서류 등 증명자료 확인 후 배제	633
	신용회복(프리카아웃 포함) 지원결정이 실효되거나 반송되어 연체등정보를 당초 등록사유 발생일자로 소급하여 재등록한 경우	- 신용회복 실효 서류 등 증명자료 확인 후 배제	634
	기타 신용회복지원과 관련하여 불기피하고 인정되는 경우	- 관련 서류 등 증명자료 확인 후 배제	635

다. 개별기관 워크아웃 등

배제 사유	배제 내용	배제 요건	사유코드
개별기관 워크아웃 등 관련	분할상환 약정에 따라 분할상환금 납입 후 연체등정보를 약정채결일로 소급하여 해제한 경우	- 분할상환 약정 관련 서류 등 증명자료 확인 후 배제 - 납입일로부터 1월 이내 조치	641
	분할상환 약정 취소, 개별기관 워크아웃 등 실효자에 대한 연체등정보를 당초 등록사유 발생일자로 소급 재등록한 경우	- 분할상환 약정 취소 관련 서류 등 증명자료 확인 후 배제 - 약정 취소일 또는 실효일로부터 1월 이내 조치	642
사표이리 포기	소멸시효 완성으로 해제되었으나 채무자의 사표이리 포기로 당초 등록사유 발생일자로 재등록한 경우	- 관련 증명자료 확인 후 배제	651
등록유예 조치 관련 정보	천재지변, 전업행 및 기타 사유로 일정한 대상자의 연체등정보를 등록유예 하였다가 추후 등록된 경우 항자금 대출, 기업구조조정협약, 신용위협 평가협약,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 각종 법령과 금융기관간 협약 등에 따른 등록유예 대상인 연체등정보를 등록취소(77) 하거나 추후 재등록한 경우	- 관련 증명자료 확인 후 배제 - 등록유예기간 종료일로부터 1월 이내 조치	661
		- 관련 증명자료 확인 후 배제 - 등록유예(조직인 또는 등록유예 기간 종료일로부터 1월 이내 조치	662

7. 채권의 양수도 등

배제 사유	배제 내용	배제 요건	사유코드
채권의 양수	양수한 채권의 신용정보를 당초 등록사유 발생일(학자금대출의 경우 대위변제일)로 소급 등록한 경우 등	- 양수도(취소) 관련 서류 등 증명자료 확인 후 배제 - 양수도(취소)일로부터 3월 이내 조치	711
	채권 양수 후 양수취소로 기 등록정보를 등록취소(77)하는 경우 등	- 양수도(취소) 관련 서류 등 증명자료 확인 후 배제 - 양수도(취소)일로부터 3월 이내 조치	712
채권의 양도	채권양도 시 후속업무 처리 후 양도일로 소급하여 신용정보를 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 등	- 양수도(취소) 관련 서류 등 증명자료 확인 후 배제 - 양수도(취소)일로부터 3월 이내 조치	713
	채권 양도 후 양도취소로 당초 등록사유 발생일로 소급 재등록한 경우 등	- 양수도(취소) 관련 서류 등 증명자료 확인 후 배제 - 합병일 등이 포함된 서류 등 증명자료 확인 후 배제	714
합병 등	합병 등에 따라 합병 등에 의해 소멸되는 기관의 보유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 합병일 등이 포함된 서류 등 증명자료 확인 후 배제 - 합병일 등으로부터 3월 이내 조치	715

8. 기타

가. 기타 업무별 배제사항

배제 사유	배제 내용	배제 요건	사유코드
착오 해지 등록취소	- 일부 상환을 전의 상환으로 처리하는 등 착오로 등록정보 해지 또는 해제 후 재등록한 경우 - 업무착오로 삭제 대상이 아닌 등록정보를 등록취소(77) 또는 등록금액·사유발생일 오류(해제와 동시에 삭제되는 경우) 처리 후 재등록한 경우	- 원장 등 증빙자료 확인 후 배제 - 오류발생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조치. 단, 변동분(등록취소, 연체 등 정보의 등록금액 및 사유발생일 정보) 자료 통보주기 단축 전까지는 오류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조치	811
착오 등록	착오로 정보 등록 후 등록취소<77> 처리한 경우	- 원장 등 증빙자료 확인 후 배제 - 오류발·생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조치. 단, 변동분(등록취소, 연체 등 정보의 등록금액 및 사유발생일 정보) 자료 통보주기 단축 전까지는 오류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조치	812
금액 오류 (해제와 동시에 삭제되는 경우 제외)	- 등록금액을 오등록하였으나 오등록금액과 정상금액의 차이가 100만원 이내(기업신용 공여정보 및 기업어음거래정보의 경우 500만원 이내) 또는 정상금액의 10% 이내인 경우 - 개인대출정보, 채무보증정보, 연체등정보의 등록금액을 오등록하였으나 정확한 금액으로 정정한 경우	- 원장 등 증빙자료 확인 후 배제 - 오류발·생일로부터 3월 이내 조치	813
사유발생일오류 (해제와 동시에 삭제되는 경우 제외)	- 사유발생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집중된 경우로서 정확한 사유발생일로 정정한 경우	- 원장 등 증빙자료 확인 후 배제 - 사유발생일 오류가 기록보존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1월 이내 조치	814
특수채권 편입	대손상각처리 등으로 해당 채권을 특수채권으로 편입하면서 연체등정보를 변경(사유코드 변경)하지 않고 특수채권으로 신규 등록한 후 기 등록된 연체등정보 또는 기 해제되어 기록보존중인 연체등정보를 등록취소(77) 처리하는 경우	- 원장 등 증빙자료 확인 후 배제 - 오류발·생일로부터 3월 이내 조치	815
채무부존재 소송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가 제기되어 연체 등정보를 등록취소(77)한 경우	- 소송 관련 증빙자료 확인 후 배제 - 소장 송달일(원고)가 채권자인 경우 내부품의일. 단, 내부품의일이 최종 판결확정일* 이후인 경우에는 최종 판결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 조치	816
		- 소송 관련 증빙자료 확인 후 배제 - 최종판결확정일*로부터 3월 이내 조치	818
채무부존재 소송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가 제기되어 개인 대출정보 또는 채무보증정보를 등록취소(77) 하거나 기업신용공여정보를 정정한 경우	- 소송 관련 증빙자료 확인 후 배제 - 내부품의일. 단, 내부품의일이 최종 판결확정일* 이후인 경우에는 최종 판결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 조치	817
* 최종판결확정일 : 제1심 및 항소심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가 경과한 날)", 상고심의 경우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			8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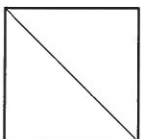
기타취소	- 고객이 약정 취소 또는 입금 취소를 통해 개인대출정보 또는 채무보증정보 등을 해지 또는 등록취소(77) 하거나 고객이 대출금 최종상환을 취소하여 재등록한 경우 - 고객이 입금 취소 또는 조건 변경 등의 사유로 연체등정보를 재등록하는 경우	- 원장 등 증빙자료 확인 후 배제 - 취소일로부터 1월 이내 조치	819
------	---	--	-----

나. 경미한 사항

배제 사유	배제 내용	배제 요건	분류 코드
개인대출정보 또는 채무보증정보의 잔액이 1000원 미만이었다가 추기대출이 발생하여 기존 대출의 등록사유발생일로 등록한 경우	신규카드의 현금서비스 정보가 구 카드의 현금서비스정보로 등록된 경우	- 원장 등 증빙자료 확인 후 배제	861
개인사업자의 신용공여를 개인대출로 등록하거나 그 개인대출을 신용공여로 등록한 경우	개인대출정보를 채무보증정보로 등록하거나 채무보증정보를 개인대출정보로 등록한 경우	- 원장 등 증빙자료 확인 후 배제	862
개인대출정보 또는 채무보증정보를 해지 처리하기 않고 등록취소(77)하는 경우(해제와 동시에 삭제 대상인 연체등정보의 등록취소(77)한 경우도 포함)	사망자 등 생존하지 않는 신용정보주체의 정보를 등록하거나 등록취소(77)한 경우	- 원장 등 증빙자료 확인 후 배제	863
개인대출정보 또는 채무보증정보를 등록하거나 채무보증정보를 개인대출정보로 등록한 경우	사망자 등 생존하지 않는 신용정보주체의 정보를 등록하거나 등록취소(77)한 경우	- 주민등록초본 등 증빙자료 확인 후 배제	864
개인대출정보 또는 채무보증정보를 등록하거나 채무보증정보를 개인대출정보로 등록한 경우	사망자 등 생존하지 않는 신용정보주체의 정보를 등록하거나 등록취소(77)한 경우	- 원장 등 증빙자료 확인 후 배제	865
개인대출정보 또는 채무보증정보를 등록하거나 채무보증정보를 개인대출정보로 등록한 경우	사망자 등 생존하지 않는 신용정보주체의 정보를 등록하거나 등록취소(77)한 경우	- 원장 등 증빙자료 확인 후 배제	866
개인대출정보 또는 채무보증정보를 등록하거나 채무보증정보를 개인대출정보로 등록한 경우	사망자 등 생존하지 않는 신용정보주체의 정보를 등록하거나 등록취소(77)한 경우	- 원장 등 증빙자료 확인 후 배제	867

다. 기타 사항

배제 사유	배제 내용	배제 요건	사유코드
기타 사항	상기 배제사항에 포함되지 않으나 당사항과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판단 증빙 확인 후 배제 - 유예기간은 상기사항에 준하여 적용	999



번 호	회 의 차 수	일 자
제 3 호	제2015 - 5차	2015. 9. 24.

의안번호	제 3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15. 9. 24. (제2015 - 5차)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통합사무국 2015년
별도적립금 추가 사용(안)**

신용정보협의회 의결안건

제 출 자	신용정보협의회 의장 유 운 상
제출년월일	2015. 9. 24.

의 제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통합사무국 2015년 별도적립금
추가 사용(안)

요 지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통합사무국」 운영경비의 별도
적립금 사용(제2015-3차 신용정보협의회 의결, '15.5.8.)과 관련하여
동 사무국의 연말까지의 운영경비가 기 의결한 별도적립금 사용으로는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불입과 같이 부족예산에 대한 별도적립금
추가 사용²⁾을 의결하고자 함

1)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시행(15.9.12)에 따라 '16년 3월까지 통합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출범하기 위한 통합추진위원회가 구성('15.4.24)되고, 이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통합사무국이 별도로 구성.운영(15.4.6)

2) 기 의결한 금액의 80% 내외 소진후 연말까지 소요예산 부족 판단시 추가
의결키로 함(제2015-3차 신용정보협의회 의결, '15.5.8)

붙 임 : 1.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통합사무국 2015년도 별도적립금 추가
사용(안) 1부.

2. 통합사무국의 신용정보협의회 부의 요청 문서(중신통 15-061,
'15.8.11.) 사본 1부, 끝.

(붙임1)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통합사무국 2015년도
별도적립금 추가 사용(안)**

□ 개요

- 금융위원회 등^{주1)}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15. 9. 12)에 따라 '16. 3월까지 통합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출범하기 위한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15. 4. 24)하고, 이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통합사무국도 별도로 구성·운영^{주2)}함에 따라, 동 통합사무국의 운영을 위한 경비 등에 신용정보사업특별회계 별도적립금의 일부를 사용키로 하고 의결금액의 80% 내외 소진 후 연말까지 소요예산 부족 판단 시 추가 의결^{주3)}키로 함

주1)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전국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보험개발원

주2) '15. 4. 6 ~ '16. 3월까지

주3) 제2015-3차 신용정보협의회 의결('15. 5. 8)

- 신용정보사업 특별회계 별도적립금 추가 사용 근거

- '15.9.2. 현재 별도적립금 사용액 : 350,286천원, 70% 소진 (세부 사용 내역 첨부1 참조)
- 9월 기준 동 금액의 88% 이상 소진 예상(통합사무국 운영 관련 예산 추가 배정 요청 공문 참조)

□ 편성(안)

- 편성 방향

- 통합사무국은 '15. 4. 6부터 '16. 3월까지 운영될 예정으로 변동가능성은 있으나 통합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출범은 금년 말로 예상하고 있어 예비비^{주4)}와 기 사용을 의결한 별도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신용정보 집중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25조의2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한 중요 사안에 대한 심의
2. 신용정보의 집중관리·활용에 드는 경상경비, 신규사업의 투자비 등의 분담에 관한 사항
3.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의 신용정보제공의무 이행 실태에 관한 조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제재를 부과하는 사항
4. 신용정보의 업무목적 외 누설 또는 이용의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신용정보의 집중관리·활용에 필요한 사항

동법 부칙 제1조(신용정보집중기관의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둔 신용정보협의회는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로 본다. 다만, 해당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허가를 신청하기 전까지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신용정보협의회 규약 제4조(협의사항)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 결정한다.

1. (생략)
2. 신용정보의 집중관리·활용에 소요되는 경상경비, 신규사업의 투자비 등의 분담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 4. (생략)
5. 기타 신용정보의 집중관리·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015-4차 신용정보실무협의회 협의('15. 9. 17)]

적립금^{주5)} 외의 추가 소요비용에 대해 예산안 편성

(붙임2)

주4) 통합사무국 초기 운영비용은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사업특별회계 예비비 (6천만원)에서 우선 사용중

주5) 통합사무국 운영비용은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사업특별회계 별도적립금 (5억원) 사용중(계2015-3차 신용정보협의회 의결, '15.5.8)

— 편성(안) : 세부내용(첨부2) 참조

○ 금액 : 52,760천원 이내(2015년도 사용가능액 약 25억원중 차감)

○ 비 목 : 신용정보사업특별회계 별도적립금

경비(용역비, 공공요금, 회의운영비, 업무추진비)

□ 집행(안)

— 예산안 편성, 항목간 전용, 예산집행절차 등 계2015-3차 신용 정보협의회에서 의결한 집행방법과 동일하게 집행

- 첨부 : 1.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통합사무국 운영비용 집행현황 1부.
- 2.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통합사무국 2015년도 별도적립금 추가 사용(안) 1부.
- 3. 2015년도 별도적립금 현황 1부. 끝.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통합사무국

수신처 전국은행연합회장

참 조 신용정보집중업무 관련 부서장

제 목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통합사무국 운영 관련 예산 추가배정 요청

1. 귀 연합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통합사무국 운영 예산이 9월말 기준 약 88%이상 소진되어 연말까지 소요예산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예산 추가배정이 이루어지도록 아래와 같이 신용정보협의회에 부의할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집행현황 : 9월 기준 예산 88.8% 소진 예상

기준 예산액	지출누계액 (9월 기준)	잔액	소진율
500,000	443,818	56,182	88.8%

나. 예산 추가배정 요청액 : 52,760천원

비목	(단위: 천원)	
	용역비	추가예산
경비	공공요금 및 체세요금	40,000
	회의운영비	910
	업무추진비	9,100
합계		2,750
		52,760

* 신출내역 상세: 별첨1 참조

- 붙 임 : 1. 별도적립금 추가 사용(안).
- 2. 별도적립금 현황. 끝.

담당 이영희 사무국장 기준현

(성내국민) (88외2)

번호 15-061 (2015. 8. 11.)

우 100-180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길 43 민보빌딩 12층

전화 02-779 8505 전승 02-779 8507 / 06228c@12.or.kr

보통인원 5명